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2.15 (수) 16:00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김희수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